

입법예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2024. 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1. 제정이유

농촌 주민 등의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640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농업 대상자 정의,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 전국·지역지원기관 및 교육훈련 기관 지정,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회원수, 기부금품의 접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농업의 대상범위(안 제2조)

- 1)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알코올·약물 질환자를 포함하도록 규정
- 2)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나. 활성화 계획의 수립 통보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안 제3조, 제4조)

- 1) 활성화 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2) 활성화 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다. 시·도 및 시·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

- 1) 시·도 및 시·군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 활성화 계획 통보 후 각각 2개월 이내에 수립, 1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

- 2) 지자체는 지역과 관련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 등을 고려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안 제6조)

- 1) 교육훈련기관의 조직형태는 공공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 2) 교육훈련기관은 전담조직·인력(전담 1명, 강사 3명 이상)·시설·장비를 갖추도록 규정

마.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회원수(안 제7조)

-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 수를 5명으로 규정하여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법 제12조제2항)와 동일하게 적용

바. 전국·지역지원기관 지정 기준 및 행정처분 등(안 제8조, 제9조)

- 1) 전국지원기관은 전담부서·전담인력(4명 이상)·시설을 갖춘 법인(공익법인,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을 지정하고, 매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
- 2) 지역지원기관은 담당부서·담당인력·시설을 갖춘 법인(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
- 3) 지정서 발급 및 위반행위에 따른 지정 취소·업무 정지(6개월 이내) 세부기준,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조치 등을 규정

사.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안 제10조)

- 1)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

- 2)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

아.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범위(안 제11조)

- 1) 농식품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2) 전국지원기관 또는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농식품부, 지자체 업무
범위를 규정(활성화 계획, 실태조사, 서비스 제공 주체 지정 등 지원)

자.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12조)

- 1) 사회적 농장 지정표시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기준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추진일정

- 1) 제·개정안 확정 : '24. 4월
- 2) 관계부처협의 : '24. 4월
- 3) 입법예고 : '24. 5~6월
- 4)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24. 7월
- 5) 차관·국무회의 : '24. 8월
- 6) 공포 : '24. 8월

나. 재정수반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제정안(별첨)

< 별첨 >

대통령령 제 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적 농업의 대상범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알코올·약물(마약류 포함)에 대한 중독 또는 오·남용으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농업을 통하여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 제공 활동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과 그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3.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5.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도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계획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도 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관련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계획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사업의 수

행을 목적으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모두 보유할 것

가.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나. 교육훈련 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강사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가. 독립적으로 구획되는 사무실·강의실·화장실 및 그 밖의 교육·훈련생을 위한 편의시설

나.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장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제7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회원수) 법 제9조제2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는 5명을 말한다.

제8조(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인력·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갖출 것
2. 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4명 이상 둘 것
3. 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적으로 구획되는 사무실·회의실·상담실 및 전산시스템을 갖출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이하 “전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국지원기관에 대하여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업무 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전국지원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 년도의 사업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인력·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담당부서와 담당인력을 갖출 것

2.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시설·공간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업무 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 또는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정

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국지원기관의 정보망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료품 등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기부금품은 게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④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부

과대상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국지원기관 또는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 수립의 지원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군 계획 수립의 지원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지원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심사 지원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심사 지원
 6.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7.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촌 재능나눔활동의 지원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의 체결 지원
 9.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지원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8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아니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6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16조 제6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 제6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9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아니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 제6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18조 제6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 제6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아니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	법 제13조 제3항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